

---

2015년 u-강남 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

# 과 업 내 용 서

---



2015. 1.

강 남 구

# 목 차

## 제 I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제2조(용어의 정의)

## 제 II 장 유지보수

제3조(유지보수 수행기준)

제4조(유지보수 대상과 범위)

제5조(계약기간 및 근무시간)

제6조(유지보수요원)

제7조(유지보수체계)

제8조(유지보수료)

## 제 III 장 예방점검 및 지원

제9조(정기점검실시)

제10조(정기점검)

제11조(수시점검 및 특별점검)

제12조(기술 등의 지원)

제13조(회의 · 교육 및 기술협조)

제14조(장비의 수리 및 예비 부품 확보)

## 제 IV 장 장애조치

제15조(장애복구)

제16조(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체상금)

제17조(계약의 해지)

## 제 V 장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

제18조(손해배상)

제19조(위험부담)

제20조(보안책임)

제21조(책임이행)

제22조(분쟁의 해결)

제23조(기타사항)

## 제 VI 장 각종 서류의 제출

제24조(용역착수시 제출서류)

제25조(용역수행시 제출서류)

# 2015년 u-강남 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

## 제 I 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강남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CCTV 및 u-강남 도시관제센터의 각종 영상 서버, 네트워크 장비, 운영 소프트웨어들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점검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- ① 유지보수 : 장애 예방·복구, 각종 시스템·S/W의 관리, 운영환경 개선, 재해 예방, 관련기술의 지원 및 관련부품의 교체 등 관제시스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- ② 유지점검 : 유지보수중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검 행위를 말한다.
- ③ 유지보수요원 : "계약상대자"로부터 "발주기관"의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이미 "발주기관"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 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
- ④ 유지보수료 :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부품비, 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, 기술료, 재계약비, 기타 유지·보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.
- ⑤ 장애 : 현장 및 관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정도의 기능저하를 말한다.

## 제 II 장 유지보수

### 제3조 (유지보수 수행기준)

- ① CCTV 및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현재상태나 개선되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.
- ② CCTV 및 관제센터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정기·비정기

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.

- ③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,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.
- ⑤ 관제센터는 유지보수를 신속한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, CCTV 현장부문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강남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CCTV 및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,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강남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⑦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CCTV 및 관제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- ⑧ CCTV 장비 및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,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강남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⑨ CCTV 및 관제센터 운영·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, 유지보수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4조 (유지보수 대상과 범위)

- ① CCTV 및 관제센터 설비 등의 유지보수 대상은 “붙임1” 및 “설계서”와 같다.
- ②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문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유지보수 일체(점검, 설정, 설치, 제거, 수리 등)
- ③ H/W, 운영체계, 응용S/W 및 데이터의 점검, 설정, 설치, 제거, 수리
- ④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기관의 예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실시일자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당해 월 예방점검 계획서를 매월 1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“발주기관”이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
- ⑥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·기능 조정 및 케이블포설 등 지원
- ⑦ “발주기관”이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작업 수행
- ⑧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·관리에 따른 기술상담
- ⑨ 자가정보통신망은 36코어 절단사고 응급접속 및 시험을 10회로 산정하였으며 계약만

료일 까지 10회 미만시 정산처리 한다.

- ⑩ 유지보수 대상 이외의 강남구청에서 운영되는 CCTV 및 관제센터 장비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1차적인 문제 확인 및 설치업체에 수리요청 등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

### 제5조 (계약기간 및 근무시간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착수일로부터~2015.12.31까지로 한다.
-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에 같음하여 지급한다.
- ③ 유지보수는 연중 24시간으로 한다.

### 제6조 (유지보수요원)

- ①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및 차량지원
  - 기술인력 상주 : 6명
    - "계약상대자"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간 상주요원과 야간 교대 상주요원을 "발주기관"이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시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가 따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  - 기술인력 비상주 : 총 2명
    - 현장의 장애처리를 위한 CCTV 기술자 2인 이상이 항상 비상주 지원을 해야 한다.
  - 유지보수용 차량 4대 상시 지원
    -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보수용 차량(크레인 2대, 점검차량 2대)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.
    -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"계약상대자"가 부담한다.
- ② 유지보수 상주요원은 "발주기관"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.
- ③ 유지보수 상주요원은 "발주기관"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0일 전에 "발주기관"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④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총괄관리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4인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야한다.
- ⑤ 상주요원은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작업일지 등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여 "발주기관"의 확인을 받고 월 유지보수내역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상주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"발주기관"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"발

주기관"의 요청 시 "계약상대자"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⑦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"발주기관"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"계약상대자"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"계약상대자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.
- ⑧ "발주기관"은 유지보수 상주요원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상주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, "계약상대자"는 "발주기관"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.
- ⑨ "계약상대자"는 유지보수 상주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"발주기관"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상주요원의 교체 시 10일 이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.
  - 가 이력서 1통
  - 나 재직증명서 1통
  - 다 증명사진 2장
  - 라 신원진술서 2통(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)
  - 마 보안서약서 1매

## 제7조 (유지보수체계)

- ①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.
- ②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응소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는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"발주기관"이 운영하는 각종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장애발생시점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, 장애처리 조치결과를 "발주기관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부득이한 상황으로 장애복구(보수)가 4시간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기기를 대체하는 등 CCTV 기능 유지 필요한 사항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⑥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,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한다.
-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"계약상대자"의 부담으로 자체조달 하여야 한다.

- ⑧ 유지보수가 종료되고 차기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3일(평일기준)간 u-강남도시관제 센터 운영전반에 대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⑨ "계약상대자"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센터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 (유지보수료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1개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발주기관"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"발주기관"은 "계약상대자"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. 단,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.

## 제III장 예방점검 및 지원

### 제9조 (정기점검실시)

- ① 정기점검의 종류는 월간점검, 수시점검, 특별점검이 있으며, 월간점검은 월 1회, 수시점검은 필요시, 특별점검은 연2회 이상 "발주기관"이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
- ② "계약상대자"의 상주요원은 월간 점검일지를 작성·제출하여 "발주기관"의 확인을 득한다.
- ③ 정기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
### 제10조 (정기점검)

- ① 유지보수 정기점검은 월간점검으로 실시한다.
- ② "발주기관"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청구 시 "발주기관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⑤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관제센터내 DLP큐브, 향온향습기, 환기설비 등은 분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.
- ⑦ 현장 CCTV시스템은 산출내역서에 따라 하우징청소, 카메라 점검, 비상벨 점검 등을 실시한다.

### 제11조 (수시점검 및 특별점검)

- ① 수시점검이란 "발주기관"이 장비의 증설·성능보강, 시스템 이설·변경 등에 따른 측정·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시 "발주기관"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② "계약상대자"는 수시점검 완료 후 "발주기관"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"발주기관"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점검이란 강남구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 외에 "발주기관"이 설치·운영하는 CCTV에 대한 지시에 의한 점검으로 "발주기관"의 요구시 "계약상대자"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한다..
- ④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"계약상대자"가 부담한다.

### 제12조 (기술 등의 지원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365일, 24시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"발주기관"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"발주기관"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설,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"발주기관"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"계약상대자"는 최대한 협조하며, 종합적인 시험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(회의·교육 및 기술협조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"발주기관"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"발주기관"이 요청하는 경우, "계약상대자"는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(정기 간행물, 교육정보 등)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는 어린이학습체험관 방문자에게 체험교육, 홈페이지관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장비의 수리 및 예비부품 확보)**

- ① "계약상대자"는 부품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.
- ② 다만,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, 내부직원의 고의에 의한 손실, 기타(화재, 침수, 낙뢰) 사고 등으로 발생한 경우 우선복구 후 비용을 계상한다.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입증책임은 "계약상대자"에 있다.
- ③ \*\*\*\*\*
- ④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부품과 동일한 성능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⑤ 전원공급 설비의 유지보수를 포함한다.
  - 점검 및 장애시 긴급조치와 구성도, 배선도, 전력사용량 현황 등의 관리 등
  - 합체내 설치된 차단기 및 전원장치 관리 등
- ⑥ "계약상대자"는 중요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"발주기관"이 요구하는 중요한 부품은 "발주기관"이 요구하는 장소에 예비품을 비치하여, 장애 시 신속히 교체토록 한다.

**제Ⅳ장 장애조치**

**제15조 (장애복구)**

- ① "계약상대자"가 "발주기관"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(구두, 서면 등)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, 장애복구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.

장애유형	구분	근무시간		근무시간 외	
		응소시간	복구완료시간	응소시간	복구완료시간
H/W, 현장 S/W 장애시		2	3	2	6
폴 등 중대한 장애시		2	6	2	8

※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말하며, 복구완료시간은 응소시

간이 포함됨.

- ②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(또는 우려)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"계약상대자"에 있으며, "계약상대자"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"발주기관"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16조 (장애조치 시간산정 및 지체상금)

-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가산한다.
- ②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,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한다.
- ③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조치가 근무시간외까지 연장되어 조치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해석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장애신고 접수 후 제16조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,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  -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= (월 유지보수금액 × 2.5/1000)/24 × 복구지연시간
- ⑤ "계약상대자"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  -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= (월 유지보수금액 × 2.5/1000) × 지체일수
- ⑥ "계약상대자"의 관리부실(시스템 조작오류, 점검 불성실 이행 등)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
- ⑦ "발주기관"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계약상대자"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⑧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.

## 제17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"발주기관"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유지보수 이행 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.

- "발주기관"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보수를 양도한 경우
  - "계약상대자"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"발주기관"이 인정하는 경우
    - ※ 단, "계약상대자"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"계약상대자"에게 있다.
  - "제15조"에 정한 장애복구 지연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  - "계약상대자"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,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
  - "제15조"에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(또는 우려)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"발주기관"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,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"계약상대자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 해지 시 "계약상대자"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## 제 V 장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

### 제18조 (손해배상)

- ① "계약상대자"의 고의 또는 과실로 "발주기관"의 재산(임차포함)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"발주기관"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"계약상대자"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"계약상대자"가 부담한다.
- ②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"계약상대자"는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제19조 (위험부담)

"계약상대자"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.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"계약상대자"는 "발주기관"에게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20조 (보안책임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"발주기관"의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

하는 담당자나 "발주기관"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보안업무처리규정 및 강남구보안업무처리규칙을 적용한다.

- ② "계약상대자"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, 구현 기법,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"발주기관"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는 유지보수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대표자는 유지보수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직,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"계약상대자"는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⑤ "계약상대자"는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21조 (책임 이행)

- ①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시 "계약상대자"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
  - 1. "발주기관"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
  - 2. 천재지변, 화재, 침수, 낙뢰,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

## 제22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, 규정에 없으면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"발주기관"의 해석에 따른다. 다만, "계약상대자"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"계약상대자"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"발주기관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## 제23조 (기타사항)

- ①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, 용역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②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,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장애발생 시 "계약상대자"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"계약상대자"에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"계약상대자"가 책임진다.
- ④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.

## 제 VI 장 각종 서류의 제출

### 제24조 (용역착수시 제출서류)

- ① 착수계(용역 수행계획서 포함)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용역수행계획서 1부.
  2. 상주인력의 재직증명서, 자격증, 경력증명서
  3. 기타
    - 가.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, 비상연락망
    - 나. 유지보수 요원의 비밀 준수 각서
    - 다.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(월) 각종 보고사항
    - 라. 기타 "발주기관"이 지정한 사항 등

### 제25조 (용역수행시 제출서류)

- ① 유지보수 현황조사서
  1. 아래의 현황 조사서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(양식은 별도협의)
    - 가. 시스템 현황 파악,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 구성도
    - 나. 전력선 배치도, 분전반 구성도, 전력 사용현황
    - 다. S/W 라이선스 파악 및 Application 운영 현황
    - 라. 각 시스템별 H/W, S/W, Application 현황
    - 마. 각 시스템별 Start/Stop 매뉴얼, 서비스 작동 확인 매뉴얼
    - 바. 각 시스템별 응급 조치 매뉴얼
- ② 기 타
  1. 비상연락망(변동 시 즉시 제출)
  2. 월간보고 : 정기점검 결과, 장애처리 현황 및 통계자료
  3. 수시보고 : 장애처리 결과